

국민이 주인인 연금다운 연금

국민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곳

- 홈페이지 <http://www.nps.or.kr>
- 뉴스사이트 <http://news.nps.or.kr>
- 블로그 http://blog.naver.com/pro_nps
- 포스트 http://post.naver.com/pro_nps
-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proNPS>
- 트위터 http://twitter.com/NPS_2010
- 노후준비서비스 <http://csa.nps.or.kr>

I 국민연금 제도

■ 일반

1.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4.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5.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6.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7. 국민연금은 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8.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9.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10. 실업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 기금 운용

11. 현재까지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규모와 운용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12.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13.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았다는데 사실인가요?
14.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인가요?

II 가입·탈퇴

■ 일반

15.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16.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17.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18.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19.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21.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22.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 23.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4.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 25. 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26.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 27.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 지역가입자

- 28.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 29.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30.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 31.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32.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33.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34.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 35. 회사를 퇴사했는데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사업장가입자

- 36.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 37.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 38.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9.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40.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 41.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42.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43.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44. 국민연금 WEB-EDI에 대해 궁금합니다.
- 45. 출산 전 · 후(출산)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46.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47.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48.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49. 직장에 입사 시 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나요?

Ⅲ 연금보험료 부과

■ 일반

- 50.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1.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 52.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 53.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54.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 55.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 56.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요?

■ 지역가입자

- 57.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 58.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59.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60.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 사업장가입자

61.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62.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63.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64.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65.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66.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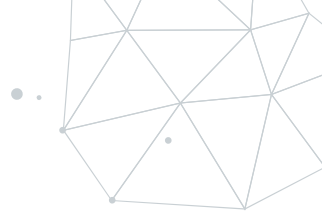
IV 국민연금 지급

■ 일반

67. 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68.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69.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70.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71.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72.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73.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74.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 노령연금

75.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76. 62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77.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78. 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79.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80.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81.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82.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 장애연금

- 83.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84.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85.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86. 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87. 장애등급 4급으로 일시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88.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 89.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90.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유족연금

- 91.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에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92.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93.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시금

- 94.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반환일시금

- 95.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 96.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97.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98.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 중복급여의 조정

- 99.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 100.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온통프로 우수답변

- 1. 기초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의 중복조정(노령연금과 유족연금)
-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3. 자격확인청구 및 실태조사청구
- 4. 외국인 대표자 국민연금 가입
- 5. 추후납부
- 6. 연금보험료 미납 확인
- 7. 기준소득월액 정정
- 8.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조기노령연금)
- 9. 분할연금
- 10. 유족연금 수급 요건



부록_국민연금 제도 안내

I

국민연금 제도

- 일반
- 기금 운용



Q1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감소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452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190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www.nps.or.kr>) 연금정보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되어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외이주를 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적용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 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Q3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
- 다만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경우에 한해 기초연금 지급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균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9년 1월 현재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2만원입니다.

(※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수급자 제한 및 감액 규정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예상 소득인정액 확인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 되는 연금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 요건 충족시 이렇게 산정된 연금이 매월 평생 지급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 연령·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때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구분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요건	-최소 10년 이상 가입 -본인의 연금수급개시연령(61~65세) 도달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하위 70%)
연금액	-가입기간, 가입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산정	-월 2.5만 ~ 25만원(2018년 9월~2019년 3월)
재원	-국민연금 기금	-조세(국비+지방비)

Q4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 가입대상과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달라
-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재해보상급여도 포함

우선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년)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1995년), 자영업자(1999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 등 다른 조건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Q5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 만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만 61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짐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참고로 2018 10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9만1천 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 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Q6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 실시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대출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림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frac{2}{3}$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실버론

- 대 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 원 한도)
 - 대부용도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 대부이자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18년 4/4분기 연 2.25%, 분기별 변동금리)
 - 대부상환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 ※ 세부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7

국민연금은 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기는 어려워
- 사회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

먼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합적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 실시되어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1999년 4월 1일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으며, 2018년 10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452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19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Q8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 해외 진출기업 및 파견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해결
-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각 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가별 최소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미국의 예를 들면, 협정 체결 전에는 미국 사회보장세를 9년 동안 납부하고 국민 연금 보험료를 4년 동안 납부한 경우, 양국 모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각 납부기간에 대해 양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중복된 기간이 있다면 한 번만 인정됩니다.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넷째,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협정 시행국 [2018년 12월 기준 총 32개국]

효 과	국 가 명
보험료 면제 (10개국)	이란(1978.6), 영국(2000.8), 네덜란드(2003.10), 일본(2005.4), 이탈리아(2005.4), 우즈베키스탄(2006.5), 몽골(2007.3), 중국(2013.1), 스위스(2015.6), 칠레(2017.2)
보험료 면제 + 가입기간 합산 (22개국)	캐나다(1999.5), 미국(2001.4), 독일(2003.1), 헝가리(2007.3), 프랑스(2007.6), 호주(2008.10), 체코(2008.11), 아일랜드(2009.1), 벨기에(2009.7), 폴란드(2010.3), 불가리아(2010.3), 슬로바키아(2010.3), 루마니아(2010.7), 오스트리아(2010.10), 덴마크(2011.9), 인도(2011.11), 스페인(2013.4), 터키(2015.6), 스웨덴(2015.6), 브라질(2015.11), 핀란드(2017.2), 퀘벡(2017.9)

Q9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 2008년 1월 1일 이후 두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 노령연금 청구 시 출산/군복무크레딧 신청

출산크레딧 · 군복무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구 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수						
	1인	2인	3인	4인	5인	· · ·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수	0인	0	12	30	48	50	50
	1인	12	30	48	50	50	50
	2인	18	36	50	50	50	50
	3인	18	36	50	50	50	50
	4인	18	36	50	50	50	50
	5인	18	36	50	50	50	50
	· · · ·	18	36	50	50	50	50

■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Q10

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제도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

2016년 8월 1일 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16년 고시 기준)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지원방법은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 실업크레딧 재원 :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Q11

현재까지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규모와 운용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2018년 11월 말 기준 연금보험료와 운용수익금 등으로 827.5조 원을 조성, 그 중 연금급여 등으로 183.2조 원을 지출하고 644.3조 원을 운용하고 있음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11월 말 기준 총 827.5조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중 운용수익으로 조성한 기금이 301.6조 원이며, 연금보험료 등으로 조성한 금액이 525.9조 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조성한 기금 중 183.2조 원을 연금지급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적립금인 644.3조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988년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은 2003년 100조 원, 2010년 300조 원, 2015년 500조 원에 이어 2017년 600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본 GPIF와 노르웨이 GPF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운용지침에 따라 금융 부문과 복지 부문,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2018년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99.8%인 643.1조 원을 주식, 채권, 대체투자 자산 등 금융 부문에 투자하고 있고, 0.2%인 1.1조 원을 복지·기타 부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말 기준 금융 부문 포트폴리오는 채권 52.1%(335.4조 원), 주식 36.2%(233.4조 원), 대체투자 11.2%(72.1조 원) 단기자금 0.3%(2.1조 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7년 한 해 동안 41조 2천억 원의 투자 수익을 얻었으며 7.26%의 연간 운용 수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의 수익률 4.75%, 운용 수익금 24조 5천억 원과 비교했을 때도 월등한 성과임은 물론 2017년 운용 수익금인 41조 2천억 원은 국민연금제도 시행(1988년) 이후 단일년도 기준으로도 최고 수익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해외에서도 운용역량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7년 유럽지역 대체투자 분야 전문 매거진인 IPE Real Estate誌로부터 아시아 연기금 최초로 “올해의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8년에는 “코어 앤 코어 플러스 투자전략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투자 권위자인 The Asset誌가 수여하는 “올해의 연기금 투자자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단은 다양한 해외 언론으로부터 운용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http://fund.nps.or.kr>

Q12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 기금이 소진되어도 정부보조 또는 부과 방식 전환 등을 통해 반드시 지급
- 2018년 11월 말 기준 적립된 기금은 약 644.3조 원이며, 1988년부터의 총 누적 운용수익금은 약 301.6조 원임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경(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약 644.3조 원이며, 1988년부터 2018년 11월 말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301.6조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 궁금하시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3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았다는데 사실인가요?

- 1988년 제도도입 이후 2018년 11월까지 국민연금 주식부문 연평균 수익률 5.78%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의 경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내외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 선진국 통화긴축, 부실 신흥국 신용위험 부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기금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투자기간을 조금 길게 보면 일반적으로 주식투자는 채권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 자산군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부터 2018년 11월 말까지 주식 투자로 81.9조 원의 누적 수익금을 거두었고, 5.78%의 누적 수익률(국내 5.12%, 해외 6.96%)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채권 투자의 누적 수익률 4.75%(국내 4.79%, 해외 4.27%)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고려하였을 때, 특정 자산군 위주의 투자만으로는 적정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는 투자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운용지침, 중기자산배분계획 및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투자 수익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채권보다 장기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공단은 감내할 수 있는 위험한도 내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 궁금하시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http://fund.nps.or.kr>

Q14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이 총직인 집사(steward)가 되어 국민 재산을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
-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의 일환으로 2018년 7월 30일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주주권 강화를 통해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하여 중·장기 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적립형 기금인 국민연금 기금의 거대화로 주식투자 비중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적 연기금으로서 신뢰 확보', '투자위험 최소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 충족'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책임투자'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이후 책임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책임투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최악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것부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사회·환경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까지 다양한 성격의 책임투자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악주: 몸과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사업 분야와 관련된 주식

국민연금은 초장기 투자자로서 기금자산 운용에 여러 세대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정 행위가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시장 규모 대비 대규모 투자자로서 국내 상장사에 분산 투자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특정 기업의 부적절한 행위가 다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을 행해야 합니다.

이에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의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7가지의 세부 원칙과 원칙별 안내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세부 원칙)

- ①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제정해 공개할 것
- ② 수탁자 책임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할 것
- ③ 비재무 사항 등에 관하여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 ④ 투자대상회사를 점검한 결과 우려사항이 있다면 건설적인 입장에서 대화하는 등 주주활동을 적극 수행하되, 내부지침을 마련해 그에 따를 것
- ⑤ 충실한 의견권 행사를 위하여 의견권 정책(가이드라인 포함)을 제정해 공개하고, 고객 등이 쉽게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의견권 행사 내역과 사유를 공개할 것
- ⑥ 의견권 행사 포함,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
- ⑦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

II 가입·탈퇴

- 일반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Q15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

네.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는, 전 국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으신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율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고,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차원에서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Q16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수급 중인 분도 가입 가능(임의가입)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90,000원 이상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19년 1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90,00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의가입이란?

- 임의가입 :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 임의가입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납부이력 없는 경우) 등
 -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최소 90,000원(2019년 1월 기준, 매년 변동)

Q17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그 외의 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 부담)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나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는 분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이하 동)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 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019년 1월 현재 30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Q18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임의가입)
-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의미함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2019년 1월 현재 중위수 소득 : 100만원, 연금보험료 90,000원)

전업주부지만 세대주로 등록될 경우 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우편이나 전화로 공단에 알려주시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19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4대 보험 업무 담당자가 신고, 개인사업자는 공단에 전화로 신고 가능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 등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팩스 등으로 꼭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Q20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 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하한)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
- 2019년 1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30만원이고,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468만원임
-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됨

Q21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사업장가입자는 제외)
- 가입자[타 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및 수급권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 타 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9년 1월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100만원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Q22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이머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 가입기준
 -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 연금보험료율 :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50%씩 부담)

Q23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소득월액 변경신청으로 가능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소득이 20% 이상 변동되면 조정 가능해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월 소득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 보험료가 반영됩니다.

Q24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 휴·폐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 납부예외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연금 가입 기간에 합산되고, 수령할 연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시)로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소득신고를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5

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또는 적용제외) 가능
- 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27세 미만은 적용제외, 27세 이후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납부 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됩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기간동안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26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 소득원(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납부해야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국적상실이나 귀국예정인 국외이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 · 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 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시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7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 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 가능
- 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지역가입대상에는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하나 아래의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계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지역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Q28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을 납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 중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50%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9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소득이 없을 경우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

먼저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휴·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폐업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 시 제출 생략)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 찾기'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수인데, 개인전자민원의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 들어가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면 지사 직원이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Q30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납입 의무도 갖게 돼
-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사업자로서의 세금 등 모든 의무를 책임진다는 의미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 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며,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 주려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도 명의대여 시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31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 소득자료 확보 → 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안내 → 월 평균소득 신고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등입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조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금을 받지 못 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가입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대한 유족연금이 또한 지급됩니다. (단, 20이상의 급여 발생 시 중복조정)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 되어 지급됩니다.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Q32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 가능.
- 공단 홈페이지 개인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할 수도

예,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33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
-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실제소득보다 높게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소득보다 낮게 신고는 안 돼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19년 1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30만원에서 최고 46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됩니다.
- 신고 소득월액이 3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68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46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Q34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 자동차 보유 여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연금은 오로지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됨

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비교

구분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사업, 근로, 농업, 임업, 어업) ※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득보다 높게 납부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재산(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 자동차 등)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임의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높게 납부가능 	
사업장(직장)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 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하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 근로)

※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

※ 국민연금은 개인단위로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부과됨

Q35

회사를 퇴사했는데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사업장 퇴사신고는 회사에서 신고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본인이 지사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해야

아니요.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Q36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 국민연금만 신고 안하면 4대 보험 자료 연계로, 나중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도

예,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에도, 현재 각 기관의 전산자료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장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때는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61세(~65세)이후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외이주, 사망 등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성실히 납부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Q37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 제외한 소득월액의 9%, 건강보험은 6.46%(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 근로자가 0.65%,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46%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65%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8.51%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고지됩니다.

■ 4대 보험 보험료율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용자(사업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	4.5%	4.5%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6.46%	3.23%	3.23%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65%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 있음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차이 있으며 사업주 전액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8.51%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Q38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생략
- 그 외의 경우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총액을 우편, 팩스, EDI,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여야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결정을 하고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총액 신고방법

- 서면신고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 EDI 신고 : EDI 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 인터넷 신고 : 신고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로도 신청 가능 (단,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Q39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부 수당, 식대, 연구보조금 등은 비과세 소득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 ▽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 ▽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
- ▽ 광산근로자가 지급 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 방송·통신·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 별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Q40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는 두 군데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 두 곳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이상이나 그 미만이나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예,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2019년 1월 현재 468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 A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90,000원/본인납부금액 45,000원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2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180,000원/본인 납부금액 90,000원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2019년 1월 현재 46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소득월액이 200만원이고, B 사업장의 소득월액이 300만원일 때,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200/(200+300) \times 468\text{만원} = 1,872\text{천원}$ 으로 연금보험료는 168,480원(본인 납부금액 84,240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300/(200+300) \times 468\text{만원} = 2,808\text{천원}$ 으로 연금보험료 252,720원(본인 납부금액 126,360원)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현재 468만원)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Q41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월 6월 7일 부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
- 비상임이사는 2010년 9월 1일 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발생 유무에 따라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월 6월 7일 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는 2010월 9월 1일 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하고, 비상임 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가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되면서, 국민연금만 무보수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2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엔 기존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금액만 납부
-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두 곳의 소득의 합이 468만원을 기준으로 달라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질문 39>를 참고하면 됩니다.

Q43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다음 달 15일까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
-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으로도 가능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필요시)

Q44

국민연금 WEB-EDI에 대해 궁금합니다.

- 국민연금 WEB-EDI 서비스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통합 서비스 시스템
-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편하게 공인인증만으로 이용 가능, 인터넷 기반의 무료 서비스 제공

국민연금 WEB-EDI서비스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해서 각종 신고 및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WEB-EDI 제공 서비스

메뉴	해당업무	신고기관
신고서작성	4대 공통신고서(입사, 퇴사, 변경신고 등)	4대보험 공통
	연금고유 신고서(내용변경, 납부예외, 재개신고 등)	국민연금
	건설일용직신고서(기준소득월액변경, 경정신청 등)	
	파일신고(대량자료 엑셀파일신고)	
증명서신청	증명서 발급신청(국민연금 각종 증명서 12종)	
송수신문서	신고서 처리결과/ 증명서 처리결과 /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등 연금통지문서 16종	
커뮤니티	고객제안, 질문 있어요 등 커뮤니티 운영	

■ 국민연금 WEB-EDI 서비스 이용방법

① https://edi.nps.or.kr 접속 ※ 포털사이트 “국민연금edi”로 검색	② “사업장관리번호 + “공인인증” 버튼 클릭	③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단, 분리적용사업장은 본↔지점간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비밀번호 추가입력	④ EDI 서비스 이용 ※ EDI서비스 최초 접속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 개인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또는(책임)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EDI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국민연금 EDI 콜센터(☎ 063-713-656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EDI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45

출산 전·후(출산)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전·후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부예외 가능

출산전·후(출산)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득이 일부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이때 환급되거나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46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대상

예.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 경제적 위험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 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셋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다섯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Q47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단시간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
-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
-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는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하면 가입 대상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2015.7.29. 국민연금법 시행)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지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지급권을 취득한 자(단, 공적연금연계신청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Q48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취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연금보험료는 본인 4.5%, 사용자가 4.5% 부담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 중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나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 신고를 하면 되며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Q49

직장에 입사 시 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나요?

- 경력증명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
- 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직장에서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사할 때 경력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입사자의 경력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들은 개인에게 경력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경력을 증빙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고, 폐업한 사업장은 경력증명서가 아예 발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는 가입증명서는 본인이 근무했던 사업장 명칭 및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가입되기 때문에 이력이 누락되는 경우도 적으며,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증명서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본인확인을 거친 후 즉시 발급이 가능한데, 업무시간(평일 09:00~18:00)내에 전화(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개인민원-가입증명서(국문)"에서 연중무휴로 가입증명서를 출력하거나 팩스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III

연금보험료 부과

- 일반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Q50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나중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 미납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추후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유리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61~65세 이후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즉,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 ② 초진일(사망일) 5년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미만
-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예를 들어, 가입대상기간 120개월 중 납부한 기간이 9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30개월인 경우에는 1/3이상 납부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대상기간 120개월 중 납부기간이 3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90개월인 경우에는 1/3이상 납부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니 미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 2011월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Q51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은 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취업을 위한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입증명서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도 미납내역은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기업에서 채용 시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미납을 개인의 신용평가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 납부증명서를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Q52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고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에 제약이 있을 수도
-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돼

국민연금을 안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2/3초과 또는 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3년 이상)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이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Q53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신고 가능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7년부터 공단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사업장가입자는 발급 불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2016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해 부담한 사용자 부담금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필요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 납입 금액을 확인해야 했으나, 2016년 5월부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용자 부담금 납입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한편 해당연도의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개인민원/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하신 금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납부액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4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 · 적용제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만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 기간(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기간(2001년 4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적용제외 된 기간(2008년 1월 1일 이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한다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1999년 4월 이후)에 대해 추납 가능하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할 수 있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에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임의가입자 추납보험료 산정 시 기준소득의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A값을 초과할 수 없음)

추납대상기간	분할납부횟수
납부예외 · 적용제외 기간(개월 수)	월 단위 최대 60회

추납보험료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혼인이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Q55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 반납은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반환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것
-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이력을 복원시키므로 가입자에게 유리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했음)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구분	1988~1998년	1999년~2007년	2008년~2027년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	70%	60%	50% (매년 0.5%씩 감소)	40%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청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에금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액을 비교해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여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56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요?

-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저임금 사업장가입자(근로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줘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87,300원 이상인 분은 월 43,650원을, 월 보험료가 87,3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

※ 2019.12.31.까지 한시적 운영되며, 농업소득보다 그 외 소득이 많은 경우 제외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최대 90%, 그 외 근로자는 연금보험료 40%가 지원됩니다.

※ 사용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으며, 월평균소득 210만원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소득기준)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 종합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연간 합이 2,520만 원 이상

이 외에도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입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1.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최소 12개월,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군복무크레딧은 2008.1.1.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2016.8.1. 이후 구직급여수급자에 대하여 12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산입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들을 통해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면 그만큼 연금수령액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Q57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소급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돼
- 나중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납부하는 게 유리

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노령연금은 최소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수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로 60~65세)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추후납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8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희망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달부터 납부 가능

예.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Q59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

예,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50%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므로 민간에서 시행하는 연금에 비해 안정적이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어 지급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

Q60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월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지원 받을 수 있어

예, 그렇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87,300원 이상인 분은 월 43,650원이, 월 보험료가 87,3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2019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 운영)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되, 2019년 1월 현재 최대 월 43,650원이 지원됩니다.

〈월 보험료에 따른 농어업인 국고보조 지원액〉

월 보험료	87,300원 이상	87,300원 미만
지원액	월 43,650원 정액 지원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위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업소득보다 농어업외소득이 더 많거나, 농어업외소득이 국민연금가입자의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적용, 평균소득월액: 2,319,100원)

Q61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 1일 입사자는 해당 월부터, 1일이 아닌 날짜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납부
-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1일 입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납부 가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달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 부터 적용)

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Q62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 월 단위로 부과하고 나중에 받게 될 급여도 월 단위로 지급

예,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 1월 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달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5천원이 공제됩니다.

이때 근무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입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일에 사망한 경우 3일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에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초일이 아닐 경우에는 입사한 달이 아닌 다음 달부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63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 인센티브는 소득에 포함, 다음 해 소득총액 신고 시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해 소득총액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보험료가 적용됩니다.

Q64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에 저임금 근로자(월 소득 210만원 미만)가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법인 대표이사 제외)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의 최대 90%이며 기존가입자는 40%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60만원인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 144,000원이며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72,000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연금보험료의 최대 90%(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를 지원받게 되어 각각 7,200원만 부담 하면 됩니다.

구분	월 보험료	보험료 지원금	사용자 부담금	본인 납부금	
일반 근로자	144,000	-	72,000	72,000	
지원 근로자	신규가입 근로자*	144,000	129,600	7,200	7,200
	기존가입 근로자	144,000	57,600	43,200	43,200

* 신규가입근로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소득이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소득기준)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 종합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연간 합이 2,520만원 이상

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현금 지원이 아니며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만큼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여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65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어
- 기여금 개별납부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

아닙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 기간이 1/3 이상이면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기여금 개별납부시 필요서류는 기여금 개별납부신청서,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신분증 등입니다. 보험료 징수 효율화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6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 위주로 압류 등의 체납처분 실시
- 체납은 전체 기금안정과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해할 수 있음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현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IV 국민연금 지급

- 일반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
- 반환일시금
- 중복급여의 조정



Q67

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 최초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액 산정
- 연금을 받는 중에는 물가상승분에 따라 연금액도 오르는 등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 수령액 많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과 같은 경우 기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준비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향후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2년생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수급연령	만60세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Q68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62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부수적인 급여로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해 드리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8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1953년생 이후 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제도 도입 및 확대 당시 고령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하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등도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1~4급)를 심사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분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Q69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제외한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후 지급
-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

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 분	2001년 이전	2002년 1월 1일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시	소득공제 불인정	소득공제 인정
급여 수령시	비과세	과세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70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 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아버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아버님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이기에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확인은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전자민원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 계산」이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다음연도 2월 이후)」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Q71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래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의 납부내역 조회 가능
- 건강, 재무, 일, 여가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 국민연금예상연금조회'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간단조회' 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계산' 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민원신청→개인민원/사업장민원→'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 공인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Q72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수령액도 조정돼
-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예,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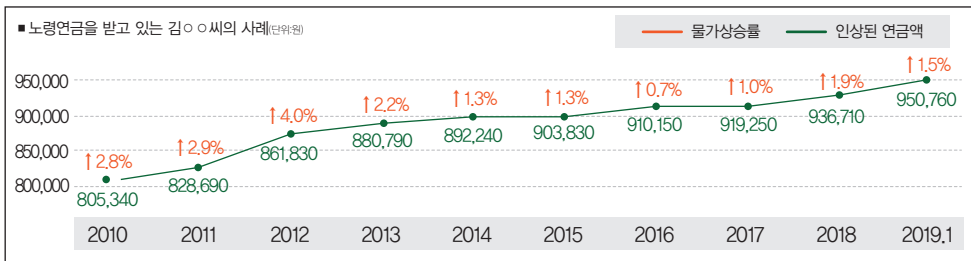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2019년 1월 15일 시행)으로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 참고 1 - 연금액 인상비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2.5%	4.7%	2.8%	2.9%	4.0%	2.2%	1.3%	1.3%	0.7%	1.0%	1.9%	1.5%

▷ 참고 2 -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인상액 사례



※ 2010년 연금수령 시 대비하여 145,420원이 인상된 연금을 2019년 1월부터 받고 계신 사례

Q73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연금 추가 지급
- 2019년 1월 현재 배우자 연 260,720원 (월 21,720원), 자녀나 부모 1인당 173,770원 (월 14,480원) 지급

예,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의(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도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는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분의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로서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입니다. 이때 수급자의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생계유지를 인정합니다.

2019년 1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60,720원 (월 21,720원)이며, 자녀·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73,770원(월 14,480원)이 지급됩니다. (매년 1월 기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됨, 2019년 조정률: 1.5%)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 급여지급연령상향에 따라 조정됨

Q74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 150만 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음
-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됨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에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금액인 150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시 연동 변경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안심(安心)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발급 기관 〉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한, 산림조합중앙회,

Q75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
-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수령 가능한 최소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어

예, 60세(~65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아 가입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년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

출생연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수급연령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Q76

62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지사방문이나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도 가능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본인명의 예금계좌
 - 국민연금 전용계좌(안심계좌)의 경우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도장(서명가능)

Q77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 지급

예,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드립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던 중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수급연령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 10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 100만 원중 5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분할비율을 6:4(노령:분할)로 별도 합의하였다면 4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혼기간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실종선고기간 · 거주불명등록기간 · 당사자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동안 정신적 · 물질적 기여 부분을 인정하고 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황에 따라 분할연금 신청가능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황

출생연도	~1952년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Q78

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356,67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지급

예.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2세 이전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연령이 만 57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않는 경우 만 62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18년도 'A값'은 2,356,670원입니다.

따라서 2019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356,670원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287,259원(연 39,447,119원)에 해당(2019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2세인 1957~1960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61세에는 원연금액의 94%, 60세에는 88%, 59세에는 82%, 58세에는 76%, 57세에는 70%가 지급됩니다. 또한 연령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매 1개월마다 0.5%씩을 가산해 지급됩니다.

*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2년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노령연금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Q79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월 평균소득금액이 2,356,670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됨.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9년 현재 2,356,670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19년도 'A값'은 2,356,670원입니다. 만약 2019년도의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중사)월수로 나눴을 때 2,356,670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287,259원(연 39,447,119원)에 해당. 2019년 기준

예를 들어, 2019년 현재 1957년생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62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62세 이상~67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감액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2015년 7월 29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수급자부터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최대 노령연금액의 1/2 감액)

예를 들어 노령연금월액이 80만원인 수급자의 소득월액이 A값의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60만원의 5%인 3만원을 매월 감액하게 됩니다.(2015년 7월 29일 법개정)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구간별 감액표(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산식	월 감액 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분의 5%	0~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0%)	5~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5%)	15~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0%)	30~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5%)	50만원 이상

※ 2015년 7월 29일 법 개정 전에는 A값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의 다소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일정 비율(연금액의 50% ~ 10%)을 감액하였음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연령별 지급률(2015년 7월 29일 전 수급권 취득자)〉

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지급률	50%	60%	70%	80%	90%

Q80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돼
-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만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 받게 됩니다.

※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임('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시작), 66세~70세(종료) 로 상향)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2015.7.29.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연기연금 신청대상 및 지급 가산율〉

구 분	2012년 6월 전	2012년 7월 이후
신청대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 (조기노령연금 포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 (조기노령연금 포함)
지급 가산율	연 6%(월 0.5%)	연 7.2%(월 0.6%)

Q81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입 중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를 이용하면 돼
- 연금수급요건을 만족했다면 연금지급의 연기(연기연금)를 신청해도 좋아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이 중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선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이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사업중단·실직 등의 납부예외 기간 뿐 아니라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1년 이상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 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임의계속가입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6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제외

이 외에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50%~100%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1년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수급자의 연금 혜택을 위해 각 지사(상담센터)마다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여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 재무, 여가 등 다양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으니 방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82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 모두 수령할 수 있어

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20년을 넘으면 각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되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2016년 1월 1일 이전 공무원 퇴직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충족되어야 수급권 발생(군인연금은 현행 20년유지)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시행일(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2. 국민연금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3.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에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①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②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연계신청을 하시면 향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www.ppsl.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83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완치 후 또는 1년 6개월경과 후 청구 가능
- 보험사와 합의 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연금지급이 정지됨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에게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이로 인해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서류가 필요함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84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
- 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장애연금이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다음의 초진일*(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애심사규정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 2016년 11월 30일 이후 초진일이 있는 경우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사이에 있고, 다음의 ① ~ ③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단,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2016년 11월 30일 전 초진일이 있는 경우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초진일이 있어야 함	미납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1/3 미만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85

산재보험법상 장애급여를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애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애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물론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애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애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6

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암이 발생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심사를 거쳐 지급여부 결정
- 1~3급은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합니다.

※ '완치라 함은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함.

암 등 질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여,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8월 1일 시행)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별 지급률〉

장애등급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장애 4급
지급률	기본연금액 100%	기본연금액의 80%	기본연금액의 60%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

Q87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일시금 수령 후 노령연금도 수급 가능
-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 안됐을 경우 노령연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

장애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신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하 환산기간이라 함)이 경과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모두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 한정된 수급자의 이중 혜택을 위하여 더 많은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인 경우에 한해 선택하지 않은 급여를 일부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그런데 장애등급이 4급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67개월분이 한꺼번에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산기간(67개월) 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바로 받으실 수 있지만, 환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환산기간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노령연금액으로 모두 총당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셨는데 장애가 악화되거나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등급이 3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을 경우에도 환산기간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금액조정을 합니다.

Q88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장애연금 수급 중이라도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 가입해야
-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 납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을 하시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전 국민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까지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 받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Q89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충족여부를 판단하고, 공단에서 장애등급(1~4급) 심사

장애연금 해당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여기에서 장애등급(1~4급)의 심사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 따라 필요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하여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시점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심사결과 장애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하여 등급 외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 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등급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결정 및 장애심사의 적정성을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문의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 결과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상향되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며 반면,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이 내려 가거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두 팔(또는 다리)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가 1급, 한쪽 팔(또는 다리)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가 2급, 한 팔(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가 3급, 한 팔(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가 4급입니다.

Q90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투석 3개월경과 후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어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성신부전증은 주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과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3개월 이상 받고 계시다면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으나 주2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장애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주2회 이상 투석요법을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받고 있다면 장애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91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남편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일시금으로 수령

예,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부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남편도 아래의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 ③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 ④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③, ④의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 (2019년 기준 2,356,670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부터는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또한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2016년 11월 29일 이전은 19세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망자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으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조정
(2013년 1월 1일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 건부터 적용되며 1953~1956년생은 56세, 1957~1960년생은 57세, 1961~1964년생은 58세, 1965~1968년생은 59세, 1969년생 이후는 60세)

2007.7.23전에는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편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2007년 7월 23일)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이 또는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92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지급
- 배우자,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등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 대상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법 제73조)

1. 배우자
2. 자녀(만 25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만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만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만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연구원은 60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 유족연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40%+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지급율 100%)

※ 연금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부모와 조부모의 유족연금 연령요건도 61~65세로 상향

(2013년 1월 1일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건부터 적용되며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Q93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9년 기준 2,356,670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 사망 후 최초 3년간,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

배우자인 유족연금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356,670원(2019년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60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356,670원, 2019년 기준)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사업(임대)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제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9년도는 월평균 2,356,670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단, 사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출생연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해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 사망자의 25세미만(2016.11.29.이전은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Q94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는 사망일시금 지급

배우자, 자녀 등의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Q95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60세 도달시 10년*간 또는 사망 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
- * 2018년 1월 25일 개정법 시행 이후 만 60세에 도달하거나, 시행일 당시 종전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건부터 적용(종전법 적용 대상의 경우 60세 도달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

반환일시금 지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2007년 7월 23일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년 7월 23일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 10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되어 연금액 산정

Q96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민을 가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예.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 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같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제시로 같음 가능)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전 청구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예정)

Q97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의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 지급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③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17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7개국)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	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 (7개국)	최소 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19개국)
E-8, E-9, H-2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2011.11.1.) 터키(2015.6.1.) 스위스(2015.6.1.) 브라질(2015.11.1.)	벨리즈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필리핀, 튀니지, 우간다, 스위스(1997.1.1.), 터키(2004.6.2.), 인도(2004.12.3.)

Q98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수급 연령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법에 정한 사유로만 지급

죄송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Q99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 남편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인 전업주부는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임의가입이라고 함), 꾸준히 납부하면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어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유사하지만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여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0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어
- 단,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하여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V 온통프로 우수답변



Q1

저는 현재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하였고, 남편도 30년 가입한 상태입니다.
살아생전에는 국민연금을 부부가 각각 받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부부 모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수급 가능한지?
2. 한 쪽이 사망하면 본인국민연금+기초연금+유족연금30%과 기초연금+유족연금
중에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2018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 입니다.

다만, 2018년 12월 현재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250,000원)의 150%이상(375,000원)일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급여액이 선정기준액을 넘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둘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두 개의 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급여의 중복조정을 하여 둘 중 한 가지 급여를 선택하게 됩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를 받게 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찬 대리(천안지사)

Q2

월 157만원 최저임금 받고 있고, 2018년 1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으로 보험료 지원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지원금이 다달이 익월 차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회사에 달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보험료지원금의 근로자지원금 미지급 건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1항 및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공제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총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진 않고, 사업장의 고지금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에서 보험료지원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의 급여에서 지원금만큼을 차감해야 하는 것이고요.

보험료지원은 당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그 다음달에 보험료지원금을 차감한 후 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을 1월에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2월에 보험료지원금이 차감이 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공제한다면 2월 귀속분부터 보험료지원금을 차감 후 공제해야 하는데요, 만약 보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지원금을 차감 받지 못하고 급여에서 보험료 공제가 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가입지원·신고센터(<http://minwon.nps.or.kr>, 개인서비스-가입지원신고센터)에서 두루누리연금보험료 지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을 받는데 지원금 만큼 공제되지 않았다면 지원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 후 사업장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이때 지급이 안 되면 7일 이내에 지급 촉구 및 고발예고문을 발송(10일 이내 기한)하고, 이후 7일 이내에 정산여부를 재확인했으나 지급이 안 된 경우 5일 이내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합니다.

은성진 주임(경인지역본부)

Q3

주 6일 매일 4시간 씩 일을 하고 있는데요. 면접 시 4대 보험 가입을 약속받았지만 고용주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10월이면 61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되므로 그때까지 버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임의가입자 상태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용계약서 작성도 묵시적으로 거부하고 있음에도 을의 입장이다 보니 항의도 못한 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가 미납한 국민연금을 퇴사 후에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먼저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장에서 체납한 연금 보험료가 있을 경우 이 중 근로자기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가입기간의 일부를 인정받을 순 있지만, 사업장에서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안 했을 경우 자격확인청구 혹은 실태조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방문, 유선, 전자민원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전자민원의 경우 <http://minwon.nps.or.kr>를 이용하시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 곁에 국민연금을 설치하시면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자격확인청구/실태조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를 하시면 공단 관할지사의 담당자가 사실 확인 후 취득 대상이 맞다면 취득신고를 하도록 하는 통지 등을 한 후 자격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확인 결과를 통지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사업장 관할지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성진 주임(경인지역본부)

Q4

외국인 대표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대표자분은 외국에 나가 계시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일정기간 체류할 경우 발급되는 외국인등록번호 혹은 무보수 대상자일 경우 무보수 확인서를 달라고 하시며 외국인가입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야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조금 혼란스러워 이 부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자는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가입 대상이며, 외국인의 경우 국가,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대상 여부가 나눠집니다.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기간 이상 있을 경우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발급되는데, 가입 대상일 경우에 이 외국인 번호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무보수 법인 대표일 경우에는 무보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사회 회의록 등)를 제출하면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대표자가 회사에서 발생하시는 소득이 있다고 하면 위에 안내드린대로 외국인 번호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며, 무보수 법인 대표이라고 하면 무보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인근 지사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진현지 주임(서울남부지역본부)

Q5

부모님께서 만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만62세부터 연금수령이 개시됩니다.
 추납을 하고 싶는데 언제까지 추납을 완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연금 납부가 종료되는 만60세까지 내야 하는지, 아니면 수령 시작되기 전인
 만62세까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추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우선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하시려면 두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이 존재해야 합니다.

-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이 없다면 당연히 추납을 이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의 자격 사항도 확인해서 정확한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추납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이 존재해야 합니다.

- 이는 추납신청일이 속한 달에 적용제외(자격상실) 또는 납부예외 상태가 아닌 자격 취득 또는 납부재개가 이뤄진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 아니라면, 만60세가 넘어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혼인이력 확인을 통해 납부예외기간 또는 적용제외기간이 확인되었다면 추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부모님이 만62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므로 57~60년생으로 확인되십니다. 연금개시 가능 연령 이전에 추납이 완료되면 당연히 연금 개시연령에 맞춰 수령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면 만62세까지 추납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금개시 가능 연령이 지나서 추납하실 경우 납부 완료 시점이 늦어지므로 그만큼 수령일도 늦어지게 됩니다.

추후납부 가능 기간 및 분할 횟수 등은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는 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찬 대리(천안지사)

Q6

어머니가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론 아마 국민연금도 연체가 된 것 같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납부가 되었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홈페이지(인터넷)뿐 만 아니라 국민연금 어플을 이용하거나, 국번없이 1355(콜센터)로 전화하신다면 더욱 쉽고 빠르게 사업장 보험료가 미납상태로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장 대표가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50% 부담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혹여 근로자의 급여에선 국민연금을 공제했음에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상태로 두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일차적으로 민원이 요청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사업장에 연락해볼 수 있고요.

장기간, 고액 미납으로 이어질 경우 자격확인청구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사업장 폐업까지 이어질 경우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대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낼 것이고요, 고액 및 장기 연체가 될 경우 압류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근로자의 보험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지연 주임(북대전지사)

Q7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가입자 결정통지서가 왔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회사 측에 말해서 정정해야 하는 건가요?
 정정해주지 않을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준소득월액이 잘못 책정되어 보험료가 잘못 고지되었을 경우 사업장에서 공단 측으로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신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정정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잘못 신고 되어 납부가 됐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과오납으로 더 징수한 내역만큼 사업장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반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추가 부담한 기여금은 공단에서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먼저 사업장 담당자와 확인하여 내용정정신고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정정에 불응하는 경우 국민연금 관할지사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구제방법으로는 자격확인청구(내방, 홈페이지 신청)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개인서비스->가입·지원신고센터->자격확인청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 신규가입 또는 납부재개시

→입사(복직)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365×30

2. 가입기간 중(전년도 12월 1일 이전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전년도 중 사업장 종사기간에 받은 소득액÷종사기간×30으로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나 관할지사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찬 대리(천안지사)

Q8

1.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상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원이 있다면 조기수령이 정지되는지요?

(수입원은 일용직 노동을 통해 얻는 수입, 현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매달 금액도 다르며 일정한 소득이 아님)

2. 국민연금 조기수령 당시 재산대비 부채나 자산에 변동이 있으면 수령이 바로 중단되나요?

(예를 들어 조기수령 신청 당시에는 차량이 경차였는데, 차량 고장 등의 사유로 차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차량 등급이 올라가면 연금 수령에 문제가 생기나요?) 차량은 경차에서 준중형으로 변경 예정 입니다.

3. 연금수령 당사자는 소득이 없으나, 배우자나 가족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경우 수령이 중단되나요?

상기 3가지 내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조기로 미리 받으시는 조기노령연금 대상자의 경우 소득기준이 초과될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2018년 기준 월소득금액 2,270,516원(사업+근로)을 초과하지 않으시면 조기노령연금은 계속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없으시고 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12개월 종사한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기준으로 38,230,814원(월 3,185,901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실 경우 조기노령연금은 중단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연금수령은 연금수급연령에서 최대 5년(60개월)이 가능하며 1개월에 0.5%씩 최대 5년 조기 수령시 30%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2.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지급정지 기준은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요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연금수급자의 배우자나 가족의 경제활동은 연금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번)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찬 대리(천안지사)

Q9

합의 이혼하고 나서 국민연금 분할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저는 나이가 63세가 되어야 연금을 탈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이혼후 3년간 신청구할 수 있으며,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 ② 이혼
- ③ 배우자 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연령도달

1961년부터 1964년 출생자의 경우 상기 ①~③ 요건은 이미 충족되었어도 만 63세가 된 때부터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관련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연진 과장(화성오산지사)

Q10

6년 전, 남편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자인데, 현재 13세 장애1급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유족연금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자녀 명의로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을 하면 계속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가?
2. 수급권 변경 시 시댁이나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아니면 엄마가 단독으로 변경 가능한가? 아이 명의 통장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3. 현재 임신 중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새로 태어난 아이를 키울 경우, 수급권 변경을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되는가?

안녕하세요.

1. 유족연금 수급하다가 재혼을 할 경우 본인의 수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3세 장애1급 자녀가 유족연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그 자녀를 결혼하시는 분 양자로 입양되게 되면 입양기간 동안은 유족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2018. 4. 25. 이후 입양하는 경우이며 2018. 4. 25.전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인 자녀의 입양 시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2.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시 시댁이나 다른 사람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하실 수 있으며,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자녀 또는 법정대리인 계좌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만약 재혼(사실혼 포함)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게 맞습니다. 재혼 및 수급권 변경은 법적으로 반드시 신고의무사항이므로 사유발생시 문의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사 유족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동 내용 상세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심금선 과장(동부산지사)

VI 부록_국민연금 제도 안내



국민연금 제도의 특징

•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험제도
-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

• “국민연금은 기금이 아니라 제도다.”

-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을 얼마만큼, 언제까지 보유하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정해진 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거두고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임
-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납 및 연금 지급방식의 특성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보다 많은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쌓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 몇 년도에 기금이 얼마이고, 몇 년도에 소진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써 국민연금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의 핵심

1 국민연금 가입대상·현황

- **(가입대상)**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 국민이 가입 대상**이 되며,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
 - 국민연금 가입구조는 ▲**당연가입자**, ▲**임의가입대상자**, ▲**가입대상 제외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며,
 - 이 중 당연가입자(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에 해당

〈국민연금 가입구조〉

구분		대상자	
가입대상 (18~60세)	당연가입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지역	사업장가입자 아닌 자 (적용제외자 제외)
		납부예외	실직, 휴직, 병역, 재학, 교정, 감호,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발생으로 보험료 납부 곤란
	임의가입 대상	임의가입	적용제외자 중 가입 희망자
		적용제외	국민·직역연금 수급권 있는 배우자를 둔 무소득자 퇴직연금등 수급권자(연계급여 미신청자) 재학, 병역 등 18~27세 미만 무소득자(납부이력자 제외) 기초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가입대상 제외		타 공적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수급자(특수직종, 조기노령)
임의계속가입		60~65세 미만인 사람 중 임의계속가입 신청자	

- **(가입현황)** 현재 18~60세 미만 3,259만명 중 **가입자 2,141만명**(18.3%)

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임의가입자
2,141만명	1,350만명	389만명	368만명	34만명

* 60세 이상의 임의계속가입자는 약 38만명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외에 **가입의 특례**로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음

○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상으로 당연가입대상이 아니거나, 적용제외자 중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 **전업주부** 등 **당연가입자가 되지 않은 자들이 연금수급권을 획득하여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거나,
-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못 채우고 경제활동을 그만둔 자 등이 실질적인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

▶ **임의가입제도**

- (개념)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 (대상)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납부이력이 없는 경우) 등
-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 최소 90,000원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기준, '18년)

▶ **임의계속가입제도**

- (개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 이후에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거나 가입기간을 더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 (대상) 가입 신청은 65세 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원하는 시점까지 가입 가능
- (종류)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
 -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 요건을 갖춘 60세 이상인 임의계속가입자
 - (기타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요

-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가입되었더라도 실업 등 소득상실로 인한 납부예외 및 장기체납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장래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협받는 국민

〈국민연금 적용현황('18.3월 기준)〉

18 ~ 60세 미만 총인구 3,259만명(100%)						
공적연금 가입자 2,301만명						공적연금 미가입자
국민연금 2,141만명					특수지역 연금가입자 160만명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958만명
사업장 가입자 1,350만명	지역가입자 757만명			임의 가입자 34만명		
	소득신고자 389만명	장기체납자 102만명	납부예외자 368만명			

* (장기체납자) 체납기간이 13개월 이상인 지역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상의 임의계속가입자는 약 38만명

- 따라서, 제도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자라도 가입기간을 늘려줌으로써 향후 연금수급권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 정책의 핵심임

■ 사각지대 해소 추진 정책

① 제도 개선을 통한 가입자 확대

- (가입대상 확대) '88년 제도 도입 당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99년 **순국민으로 가입대상 확대**

* '92.1월 5인 이상 사업장 ⇒ '95.7월 농어촌지역 ⇒ '99.4월 도시지역자(순국민) ⇒ '03.7월~'06.1월 5인 미만 사업장을 지역가입대상에서 사업장가입대상으로 전환

** 가입자수(만명): ('88.1월) 420 → ('92년말) 502 → ('95.7월) 752 → ('99.4월) 1,627 → ('03년말) 1,718 → ('06년말) 1,774 → ('18.3월) 2,179

○(일용근로자) 국세청·고용노동부와 **일용근로소득자료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확대('15.1월~)

* 자료연계를 통해 '17년 104만 9천명의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 추진 중 : **일반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장 가입기준 적용**(월 20일 → 월 8일 이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18세 미만 근로자)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와 관계없이(기존에는 사용자 동의 필수) 사업장가입 허용**('15.8월~)

* '17년 연간 18세 미만 근로자 총 32,630명 사업장 가입

○(단시간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을 점진 확대**하여 가입 유도

* 월 80시간 이상 근로('03.7월) → 월 60시간 이상 근로('10.9월) → 복수 사업장에서 근로한 총 합산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16.1월~)

** '17년 복수사업장 근무 단시간근로자 중 438명 사업장 가입

○(경력단절여성) 과거 국민연금에서 적용제외된 기간(무소득배우자, 1년 이상 행방불명, 기초수급자 등 사유)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하여 연금수급권 확보 지원('16.11월~)

* '16.11.30일 제도시행 이후 현재('18.4월 기준)까지 약 11만건 신청

②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및 내실화

○(농어업인)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50%(최대 40,950원) 지원('95.7월~)

* '17년 기준 월평균 약 37.6만명에게 매월 3.9만원씩 지원

○(저임금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시행**('12.7월~)

* 저임금근로자 월소득기준(만원): ('12)125→('13)130→('14)135→('15~17)140→('18)190
보험료 지원율: ('12~15)50% → ('16~17)신규가입자 60%, 기존가입자 40% → ('18)신규가입자 80~90%, 기존가입자 40%

** '17년 기준 총 146.5만명의 근로자에게 4,285억원 지원

○(실직자)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16.8월~)

* '16.8.1일 제도시행 이후 현재('18년 4월말)까지 약 67만명 신청

③ 기타 제도개선

○(출산·군복무크레딧) 출산에 대해 가입기간(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 추가인정, 군복무기간에 대해 6개월의 가입기간 추가인정('08.1월~)

○(장애·유족연금 수급요건 개선) 유족연금 지급 대상 자녀 연령 상향조정(18→24세),
장애·유족연금 수급요건 합리화*('16.11월~)

〈 장애·유족연금 수급요건 개선 현황 〉

구분	기존	개선
발생시점	가입 중 장애 발생 또는 가입 중 사망	18세~60세 미만까지 발생한 장애 또는 사망
납부요건	보험료 고지기간의 2/3 이상 납부	가입대상기간의 1/3 납부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납부 또는 장애발생 전 10년 납부

- (보험료율) 가입자 소득(근로·사업 소득)의 9%,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4.5%)씩 부담, 그 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은 전액 본인 부담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 변경 연혁 〉

구분		'88 ~ '92	'93 ~ '97	'98 ~ '99.3	'99.4
사업장가입자	계	3.0%	6.0%	9.0%	9.0%
	근로자	1.5%	2.0%	3.0%	4.5%
	사용자	1.5%	2.0%	3.0%	4.5%
	퇴직금전환금	-	2.0%	3.0%	-

〈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 변경 연혁 〉

구분	~'00.6월	'00.7월~ '01.6월	'01.7월~ '02.6월	'02.7월~ '03.6월	'03.7월~ '04.6월	'04.7월~ '05.6월	'05.7월~
지역 가입자	3.0%	4.0%	5.0%	6.0%	7.0%	8.0%	9.0%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보험료를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선과 상한선이 정해져 있음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선 월 30만원 ~ 상한선 월 468만원('18.7.1~19.6.30)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증가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매년 자동 상향 조정

* '10년부터 매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만큼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국민연금법시행령(제15조) 개정('09.12.30)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5.7 ~2016.6)	2016년 (2016.7 ~2017.6)	2017년 (2017.7 ~2018.6)	2018년 (2018.7 ~2019.6)
하한액	25만원	26만원	27만원	28만원	29만원	30만원
상한액	398만원	408만원	421만원	434만원	449만원	468만원
A값변동	1,023	1,024	1,032	1,030	1,034	1,043

* 계산방식 : 당해“A”값 ÷ 전년“A”값(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하한액 또는 상한액(만원 미만은 반올림)

■ **(국제 비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

○ OECD 34개국 중 공적연금에 의무가입하는 22개 국가의 **공적연금 보험료율은 평균 15.4%** (2016년 기준, 출처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7)

〈 OECD 국가 평균소득 근로자의 의무가입 공적연금 보험료율 〉

국가	근로자	사용자	합계
호주	-	9.5%	9.5%
벨기에	7.5%	8.86%	16.4%
캐나다	4.95%	4.95%	9.9%
덴마크	0.26%	0.52%	0.8%
핀란드	7.2%	18.0%	25.2%
프랑스	7.25%	10.4%	17.65%
독일	9.35%	9.35%	18.7%
헝가리	10.0%	20.75%	30.75%
아이슬란드	-	7.35%	7.35%
이스라엘	3.75%	3.75%	7.5%
이탈리아	9.19%	23.81%	33.0%
일본	8.914%	8.914%	17.828%
한국	4.5%	4.5%	9.0%
룩셈부르크	8.0%	8.0%	16.0%
네덜란드	4.9%	-	4.9%
폴란드	9.76%	9.76%	19.52%
슬로바키아	4.0%	14.0%	18.0%
스웨덴	7.0%	11.4%	18.4%
스위스	4.2%	4.2%	8.4%
터키	9.0%	11.0%	20.0%

* 공적연금 보험료율이 낮은 국가는 의무가입하는 사적연금의 보험료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예: 덴마크 12.8%, 아이슬란드 12%, 이스라엘 17.5%, 네덜란드 16%, 스위스 6.8% 등)

■ 크레딧 제도란?

-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
-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지원 필요 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도 활용
 - 출산 · 군복무크레딧은 가입기간 추가 인정, 실업크레딧은 보험료 지원

■ 크레딧 제도의 중요성

- 국민연금 성숙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낮은 사회진출*, 출산 · 양육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충분한 가입기간 확보 곤란
 - * '07년 대비 대학졸업 소요기간 5개월 증가(3년 10개월 → 4년 3개월), 졸업 후 첫 취업 소요기간 0.3개월 증가(10.9개월 → 11.2개월), '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 ** '17년 12월 기준 평균가입기간(남29개월, 여85개월), 평균급여액(남45만원, 27만원)
- 그간 근로빈곤층, 전업주부 등 연금가입 확대 방안을 강구했으나, 충분한 급여 확보를 위한 가입기간 확대 노력을 본격화할 필요
- 외국의 경우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활성화하여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는 상황

■ 현행 크레딧 제도

- ① (출산크레딧)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의 추가 가입기간 인정*, 가구 단위로 부** 또는 모의 노령연금액 인상('08.1.1. 시행)
 - *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인당 18개월 추가 인정, 최대 50개월 상한
 - ** 통상 부가 수급연령에 먼저 도달, 현재 99% 이상 부의 노령연금 증액 효과

- 크레딧은 A값의 100%를 소득으로 인정, 노령연금 취득 시 산입하며 1년 가산 시 월 연금액 약 25,500원 인상 효과('18년 기준)

- 현재까지 총 수급자 901명, 857백만원 집행(국고 30%, 기금 70%)

② (군복무크레딧)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에게 6개월 가입기간 추가 인정('08.1.1. 시행)

- 크레딧은 A값의 50%를 소득으로 인정, 노령연금 취득 시 산입하며 6개월 가산 시 월 약 9,570원 인상 효과

- 2047년부터 예산 소요 발생(국고 100%)

③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구직급여 수급자(18세 이상 60세 미만) 중 희망자에 대해 보험료 지원('16.8.1. 시행)

- 구직급여 수급기간(1회 당 3~8개월) 동안 평생 최대 1년 지원하되, 재산세 과세금액 6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1,680만원 초과자는 제외

-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 50%, 최대 70만원)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 25%는 본인부담

* '18년 62억원 편성, 고용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균분

■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 2008년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2016년 실업크레딧을 도입하였으나, 지원 수준이 충분치 않고 체감도도 높지 않은 상황

○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국민연금의 특성상 국민연금 취약계층인 청년·여성에 대한 크레딧 제도 확대 필요

* 현재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에서 크레딧 제도 개선방안 논의 중

참고

주요국가의 크레딧 제도 운영 사례

국가	크레딧 유형 및 주요내용(인정기간, 인정소득)	
스웨덴	양육	자녀당 4년, 출산 전후 소득 격차
	질병·장애	장애연금 수급기간, 최고 소득 3년치 평균의 93%
	군복무·사회봉사	복무 전 기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50%
독일	실업	최대 24개월, 가입자 평균 소득의 60%
	양육	자녀당 3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노인봉양	돌봄 전 기간, 중증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100%
	질병·장애	최대 78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60%
프랑스	군복무·사회봉사	최대 18개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60%
	실업	실업급여 수급 전 기간, 생애 평균 소득의 100%
	양육	자녀당 2년, 생애 평균 소득, 3자녀 이상 연금액 10% 증액
영국	질병·장애	질병·장애급여 수급 전 기간, 수급 직전 소득의 100%
	실업	실업급여 수급 전 기간
	양육	12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전 기간
	노인봉양	돌봄수당 수급 전 기간
일본	질병·장애	질병·장애급여 수급 전 기간
	육아휴직	자녀당 3년 육아휴직기간, 휴직 직전 소득

1 국민연금 급여 산정 1 : 소득비례와 소득재분배 기능의 조화

■ 국민연금 급여는 기본연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기본연금액은 소득재분배, 본인소득·기여 반영 등을 위해 세 가지 요소를 반영

- ①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 연금수급 전 3년간(균등부분, A값)
- ② 본인 평균 소득(소득비례부분, B값)
- ③ 연금보험료 납부기간(가입기간)

■ 급여 산정식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본인 평균소득(B값)을 합한 값에 비례상수(소득대체율을 맞추기 위한 상수, '18년 45.0%⇒1.350, '28년 40%⇒1.2)를 곱하고 가입기간을 반영

○ 소득재분배, 본인소득비례 부분을 1:1로 동등하게 반영하여 사회보험으로서 소득보장 및 재분배 기능을 구현

○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을 산출하고, 추가 가입기간 1년마다 기본연금액이 5% 증가(10년은 50%)

구체적 급여 산식

▶ 산식 : [가입기간별 비례상수 × (A+B)] × (1+0.05n/12) n : 20년 초과 월수

$$[2.4(A+0.75B) \times \frac{P_1}{P} + 1.8(A+B) \times \frac{P_2}{P} + 1.5(A+B) \times \frac{P_3}{P} + \dots + 1.2(A+B) \times \frac{P_{23}}{P}] \times (1+0.05n/12)$$

* 2.4, 1.8, 1.5, ..., 1.2 : 가입기간별 비례상수(해당기간의 소득대체율)

* P : 전체 가입월수 / P₁~P₂₃ : 연도별 가입월수(▲P₁:1988~1998년 ▲P₂:1999~2007년

▲P₃:2008년, ▲P₄~P₂₂:각각 2009~2027년 ▲P₂₃:2028년 이후의 가입월수)

가입기간	'88~'98 (P ₁)	'99~'07 (P ₂)	'08 (P ₃)	'09 (P ₄)	(...)	'18 (P ₁₃)	(...)	'28 이후 (P ₂₃)
비례상수	2.4	1.8	1.5	1.485	(...)	1.350	(...)	1.2
소득대체율	70%	60%	50%	49.5%	(...)	45.0%	(...)	40%

- **(실질가치 1차 보전)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 최초 산정 시 보험료를 납부했던 기간의 소득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반영(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시행령 제36조)**

* 소득 상승률(정확히는 A값 상승률)을 반영하여 환산

(예) 1988년 100만원 소득은 606만 3천원으로 환산(1988년 A값 374,485원 대비 2018년 A값 2,270,516원 = 6.063배)

〈예시〉 199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매월 21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B씨가 2018년 5월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10만원 기준으로 월 약 68만1천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210만원을 재평가를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84만원을 받게 됨.

- **(실질가치 2차 보전)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인상(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

* (예)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0% 반영 시 전년도에 100만원을 수령했던 연금수급자는 다음 해에는 2만원이 인상된 102만원을 수령

■ 국민연금 급여는 20년 수급시 **소득 전 구간에서 수익비가 1보다 높아 납부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이 받는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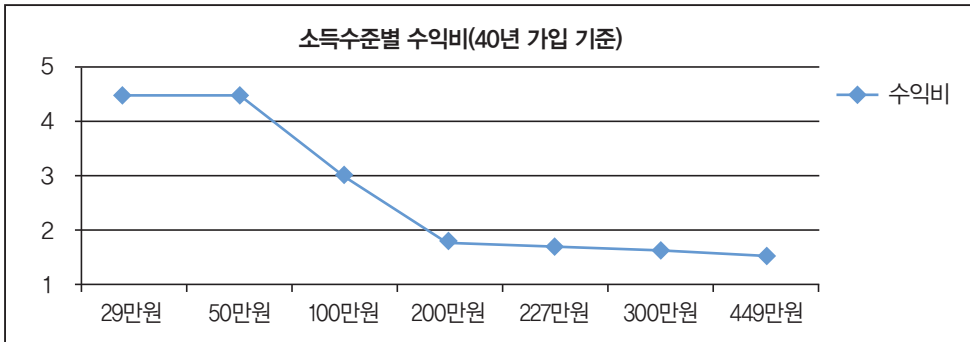
○ 40년간 소득의 **9% 보험료 부담**(직장가입자는 4.5% 본인부담), 연령 상한 없이 남은 생애 **40% 소득대체율 보장**

○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급여액 산정에 본인기여와 동일 비율로 반영**, 저소득 가입자에게 **기여 대비 보다 많은 급여 지급**

40년 가입 기준 소득수준별 수익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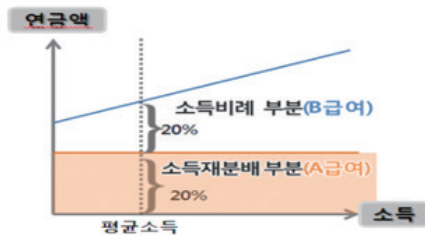
구분	29만원 (하한액)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27만원 (*18년 A값)	300만원	449만원 (상한액)
수익비(배)	4.5	4.5	3.0	1.9	1.8	1.6	1.4

* 매년 소득은 가입자 평균소득상승률, 기본연금액을 물가상승 연동, 총 수급기간은 20년 가정



※ 연금급여액은 가입기간이 동일할 경우,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에 따른 급여(A급여)는 동일하고 **본인소득에 따라 받는 급여(B급여)에 따라 달라짐**

(예시)
 평균소득자(A값=B값),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 40%(2028년)는
 A급여 20%, B급여 20%로 구성



■ 다만, 높은 수익비의 연금산정식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연금제도 미성숙**으로 인한 **연금액 수준은 낮은 상황**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례노령연금 수급자**(1,463,131명)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3,706,516명)의 **39.5%**를 차지

○ **20년 이상** 가입하고 **정상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연금 수급을 개시한 사람은 **8.9%** (328,772명)에 불과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

(기준 : '17.12월 당월)

구분	노령연금 수급자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
분할연금 수급자 제외	12.4년	17.4년
특례 · 분할연금 수급자 제외	15.9년	17.4년

연금 종류별 평균 수령 월액

(기준 : '17. 12월 당월, 단위 : 원)

	계 (특례제외)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
		소계 (특례제외)	20년이상	10~19년	소득활동	조기	특례	분할	소계	1급	2급	3급	
최고	1,994,170	1,994,170	1,994,170	1,697,440	1,703,560	1,725,000	987,530	1,360,530	1,606,420	1,606,420	1,240,390	949,190	955,540
최저	31,180	31,180	262,820	136,150	93,370	99,410	68,870	31,180	158,790	200,070	218,540	158,790	97,630
평균	363,570 (444,390)	366,380 (500,220)	892,030	393,770	739,140	515,280	211,900	186,450	438,810	598,030	471,790	362,340	268,620

■ 향후 연금제도 성숙, 크레딧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실질 소득대체수준 제고 필요

■ OECD 국가별 소득대체율 비교

○ OECD 35개 국가의 소득대체율 평균은 약 40.6% (2016년 기준, 출처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7)

국가	수치	국가	수치
호주	0.1%	한국	39.3%
오스트리아	78.4%	라트비아	47.5%
벨기에	46.7%	룩셈부르크	76.7%
캐나다	41.0%	멕시코	4.0%
칠레	0.0%	네덜란드	28.7%
체코	45.8%	뉴질랜드	40.1%
덴마크	14.8%	노르웨이	39.2%
에스토니아	29.1%	폴란드	31.6%
핀란드	56.6%	포르투갈	74.0%
프랑스	60.5%	슬로바키아	39.6%
독일	38.2%	슬로베니아	38.1%
그리스	53.7%	스페인	72.3%
헝가리	58.7%	스웨덴	36.6%
아이슬란드	3.2%	스위스	24.2%
아일랜드	34.1%	터키	69.9%
이스라엘	19.4%	영국	22.1%
이탈리아	83.1%	미국	38.3%
일본	34.6%	OECD 35개국 평균	40.6%

* OECD 기준 소득대체율은 평균임금(average-wage) 근로자의 근로 당시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급여 수준

**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가는 의무가입하는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ex 호주 32.1%, 칠레 33.5%, 덴마크 71.6%, 에스토니아 20.6%, 아이슬란드 65.8%, 이스라엘 48.5%, 멕시코 22.4% 등)

- 다만, 높은 수익비의 연금산정식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연금제도 미성숙으로 인한 연금액 수준은 낮은 상황**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례노령연금 수급자(1,463,131명)**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3,706,516명)의 **39.5%**를 차지

○ **20년 이상 가입하고 정상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연금 수급을 개시한 사람은 8.9%**(328,772명)에 불과

-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은 **노후, 장애, 사망**에 대해 소득보장

- ①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노후에 매 월 연금을 받는 **노령연금**
- ②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장애연금**
- ③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 연금액의 일부를 유가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유족연금**

〈국민연금 수급자〉

연도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2017	447만명	371만명	7만명	69만명
2016	413만명	341만명	7만명	65만명
2015	383만명	315만명	7만명	61만명

* 65세 이상 인구(735만명)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288만명) 비율은 39.2%, 이 중 노령연금(248만명)은 33.7% ('17.12월 당월)

- **(장애연금)** 본인의 **기본연금액에 장애등급별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액(가족수당)**을 합하여 지급

장애등급	장애연금액
1급	기본연금액×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6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이란, 본인의 가입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노후에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말함

** 이때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일 때는 20년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여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일정 수준 이상을 지급함(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1년마다 기본연금액이 5%씩 증가)

■ (유족연금) 사망한 사람의 기본연금액을 그 사람이 가입한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하여 지급

연금 가입기간	유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6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5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40% + 부양가족연금액

* 유족연금도 장애연금과 마찬가지로 기본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일 때는 20년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여 유가족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일정수준 이상을 지급함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1년마다 기본연금액이 5%씩 증가)

■ 그 밖에, 일시에 반환받는 **반환일시금**이 있음

* 반환일시금 지급 기준 : 연금수급요건(10년 이상 가입)을 충족치 못하고 수급연령에 도달, 사망, 국외이주하는 경우

**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기간의 이차(해당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지급

■ 1998년 연금 개혁 결과, 연금수급연령을 '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33년에는 65세 도달

▲ '17년까지는 61세, ▲ '18년부터 '22년까지는 62세,
 ▲ '23년부터 '27년까지는 63세, ▲ '28년부터 '32년까지는 64세
 ▲ '33년 이후는 65세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출생연도	~'52년	'53~'56년	'57년~'60년	'61년~'64년	'65년~'68년	'69년~
수급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주) 수급연령 상향조정 범위 : 노령·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부모의 연령), 반환일시금 등

(’18년 기준)

급여종류	수 급 요 건	급 여 수 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 62세 도달 -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 급여산식에 따른 연금액 - 20년 미만(이상) 가입 시 5%씩 감액(증액)
	특례노령연금 ○ 수급연령 도달 - 5년 이상 10년 미만 보험료 납부 ※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 이미 고령인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 확보 (적용 시점 : 최초 도입(88년), 농어촌 확대(95년), 도시지역 확대(99년))	○ 급여산식에 따른 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25%~50%
	조기노령연금 ○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5년 전부터 가능(57세 이상~62세 미만) - 소득이 A값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연령별로 1세당 6% 감액 지급 - 56세(70%), 57세(76%), 58세(82%), 59세(88%), 60세(94%)
	분할연금 ○ 혼인 중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노령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였던 자가 이혼 후 62세 도달한 때 또는 62세 이후에 이혼한 때	○ 배우자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 장애등급(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80·60% 지급 ○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50·60% 지급 ※ 배우자 사망시 3년간 지급하고, 이후 소득이 있는 경우 정지하였다가 57세 이후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함
일시금	반환일시금 ○ 연금수급요건을 충족치 못하고 62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 본인 희망 시 60세 청구 가능	○ 납부보험료에 일정이자 가산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때	○ 유족범위 및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생계를 함께하던 자 ○ 반환일시금 상당액 (최종 or 평균기준소득월액의 4배이내)

■ 연금 수급과 퇴직시기간 격차로 발생하는 소득크레바스 완화를 위해 수급연령 도달 최대 5년 전부터 수급 가능한 조기노령연금 운영

○ 수급요건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조기 수령 1년당 기본연금액 6%씩 감액(월 0.5%)

- 연금액 증액을 위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중단하고 보험료 납부 재개가 가능토록 지급정지제도도 함께 운영

* 1개월 정지 시 연금액 0.5% 증액, 과거에는 가입자 평균소득 초과자만 정지할 수 있었으나 '17.9.22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선택에 따라 정지할 수 있도록 개선

○ '17년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54만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371만명의 14.6%에 달하나,

- 신규 수급자는 3.7만명으로 '13년 8.5만명 기록 이후 감소 추세

조기노령연금 연도별 수급자 수

연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노령연금 수급자(A)	2,149,168	2,330,128	2,489,614	2,748,455	2,840,660	2,947,422	3,151,349	3,412,350	3,706,516
조기노령 수급자(B)	184,608	216,522	246,659	323,238	405,107	441,219	480,343	511,880	543,547
신규신청(C)	34,792	34,189	32,454	79,044	84,956	40,257	43,447	36,164	36,669
전년대비 증가인원(D)	33,635	31,914	30,137	76,579	81,869	36,112	39,124	31,537	31,667
조기노령 비중(B/A)	8.59	9.29	9.91	11.76	14.26	14.97	15.24	15.00	14.66

* 조기노령연금으로 처음 수급한 수급자는 수급연령 도달 후에도 조기노령연금으로 집계

■ **수급 연령 도달 후 최대 5년 동안 1회에 한해 연금액의 전부나 일부 지급을 연기하는 대신 늘어난 연금액을 수급하는 연기연금도 운영**

○근로·사업 소득으로 인해 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에 활용되며, **1년 연기시 7.2% 증액(월 0.6%)**

* 연금 수급 연령 도달 후 소득 있는 업무 종사로 인해 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이며, 1년 연기 시 7.2% 증액(월 0.6%)

○'07년 제도 도입 이후 평균수명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연기연금 신청자 수 증가 추세**

- '17년 12월 현재 연기 중인 건은 **51,228건**이며, **연간 약 2만건** 신청

연기연금 연도별 신청 건수

(기준 : '07~'17.12월 말, 단위 : 건)

구분	계	~'11	'12	'13	'14	'15	'16	'17
건수	75,036	3,111	7,790	743	9,165	14,845	20,102	19,280

* 해당연도 : 연기연금 적용 시작일 기준, 건수 : 연기신청 기준으로, 연기연금 종료건도 포함

< 참고 : 일본의 연기연금 확대 동향 >

▶ **현재 일본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

- 65세부터 수급 가능
- 60~64세 조기 수급 가능(감액비율: 앞당긴 월 수 × 0.5%, 연 6% 감액,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
- 66~70세 연기 수급 가능(증액비율: 연기한 월 수 × 0.7%, 연 8.4% 증액, 우리나라보다 연 1.2%p 높은 수준)

▶ **연기연금 확대 동향**

- 일본 정부는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연기연금의 상한 연령을 현행 70세에서 75 또는 80세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중임
- 또한, 70세 이상으로 연금 수급을 연기할 경우 증액율을 연 8.4% 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함께 고민 중

발행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소통실)

발행 2019년 2월

주소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전화 (국번없이) 1355

홈페이지 <http://www.nps.or.kr>

블로그 http://blog.naver.com/pro_nps
